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4차)

1.일 시	2012년 4월 4일 AM 11:30분	2.장 소	8동 4층 학생처 회의실
3.참석자	안우영, 이민표, 김익진, 박원규, 양재득, 한상덕, 함경오	4.불참자	김종기, 안현아
5.안 건	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에 따른 심의(건)		

6.회의 내용

- 간 사 : 등록금심의위원회 간사(정구명)은 고등교육법 제11조,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-2206호(2012.3.19)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업무 안내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함.
- 위원장 : 먼저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다.
- 위원장 :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(법인부담금)의 개정으로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,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연단위로 기간 및 금액을 정하여 신청하되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어 우리대학은 3년의 승인신청을 제출하려 함을 설명하고, 김익진 위원에게 법인부담금 부담현황 및 향후 3년간 예상부족액(심의 금액)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 함.
- 위 원 : 김익진 위원은 학교법인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은 2008년은 총 육천만원으로 13.64%, 2009년은 육천만원으로 12.93%, 2010년은 육천만원으로 11.34%, 2011년은 일억 육천만원으로 29.47%를 부담하였으며, 이는 경상비로 매년 전출한 사천만원은 제외된 금액으로 향후 3년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012년 삼억원, 2013년 삼억 이천만원, 2014년 삼억 사천만원으로 예상 됩니다. 이는 교직원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법인에서도 수익사업체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여 법정부담금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함. 인건비는 매년 5% 상승을 예상하였으며, 2012년도 사학연금 전체부담금 예정액이 2012년 3월 1일자로 조교는 국민연금 대상으로 전환되어 줄어들 것이라 설명 함.

간서명 - 위원 : 김익진

위원 : 김종기

위원 : 한상덕

위원장 : 김익진 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문 및 논의할 것을 제안함.

위 원 : 이민표 위원은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 승인 조건 및 향후 3년간 법인부담금 예상액을 실행가능 한 것인지 질의 함.

위 원 : 김익진 위원은 승인조건은 1차적으로 사학진흥재단에서 예·결산에 대해서 판정 후 교과부 전문대학과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으며, 법인부담액이 늘어나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고, 증가부분의 부담금액은 크지만 또한 거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.

위 원 : 한상덕 위원은 법인의 노력의지가 중요하다고 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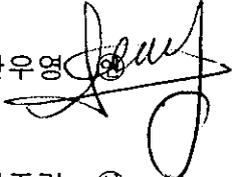
위 원 : 양재득 위원은 법인부담금 부족분을 학교가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법인 수익사업의 다변화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,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할 것을 말하자.

위 원 :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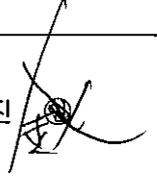
위원장 :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 후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폐회를 선언함.

위 심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 ◦ 날인함.

2012년 4월 4일

위원장 : 안우영 

부위원장: 이민표 

위 원 : 김익진 

위 원 : 김종기 

위 원 : 박원규 

위 원 : 양재득 

위 원 : 한상덕 

위 원 : 함경오 

위 원 : 안현아 